

사무직 여성 90년 가을 통권 2호

<이렇게 개선했다>

경견완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 신한은행 노동조합 -

최근 2~3년 사이 급격한 사무자동화로 인해 사무직에 종사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직업성 질환인 “VDT” 증후군과 “경견완장해”에 대한 직업병 인정 여부가 노동조합과 회사측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90년 단협에 경견완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화 한 신한은행은 타 회사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결핵성 폐질환·B형간염 및 업무상 경견완증후군 포함) 관계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의 실비를 부담함은 물론 신속하고 충분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단협으로 쟁취하기까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89년 3월 신한은행 노동조합 여성부에서는 서울시내(경기, 수원 포함) 점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여행원 108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9.9%에 해당하는 여직원이 업무상 통증을 호소해 왔다.

여행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오퍼레이터(Operator) 근무가 25.8%, 텔러(Teller) 근무가 32%로 담당 업무에 따라 직업병적 증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동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면서 나타나는 신체부위별 증세는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시력저하 및 환각현상(45.2%), 어깨·팔·손가락 통증 및 마비현상(32.1%), 허리요통(10.4%), 각막염 등 안질환(8.5%), 무좀(1.9%), 두통(1.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텔러의 경우에는 허리요통(37.5%), 어깨·팔 통증 및 마비현상(30.3%), 다리 근육통(23.2%), 피부병, 두통 등(9%)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개인별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병원치료가 28%,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24.3%, 간단한 안마나 찜질,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18.4%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 임시로 치료를 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점 내의 계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담당 업무량이 많아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에서는 30.6%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24.5%가 계이동이 되지 않아 동일업무 반복으로 치료효과가 없다, 20.4%가 중병이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근본적 치료 불가능한 임시치료 등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에서는 여행원의 건강문제를 해결,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상 질병에 경견완증후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었기에 별 무리 없이 단협으로 명문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협에 명문화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화 되면서 거의 모든 여직원이 P·C 업무를 맡게 되고, 또 남직원의 경우에는 P·C로 문서처리를 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전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노동시간의 단축 및 작업 중 충분한 휴식, 작업환경 조건의 개선, 정기적인 진단 등으로 예방해 나가야 한다.

한 여직원의 경우 “우견갑부염좌증”이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은행업무 처리 과정 중 발

생한 것이 명확함에도 경견완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담당 의사들의 경견완증후군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직업병 인정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개선했다>

근육통, 수지경련증, 시력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 서울 신탁은행 노동조합 -

신탁은행 노동조합은 90년 8월 30일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단체협약에 “ 업무상 질병에 오퍼레이터 및 타이피스트의 근육통과 수지의 경련증 및 시력장애 추가인정 ”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사무직 직업병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을 세워 놓았다.

사무직 직업병의 판정은 일반 병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가입한 기업체의 종업원으로서 직업병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산재에 가입한 기업체도 아니고, 혹 가입했다 해도 직업병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무직 직업병인 “ 경견완증후군 ” 및 “ VDT 증후군 ”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일반 외과에서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 수지경련증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 혜택의 범위가 보다 넓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노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90. 7. 18.)의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56개분회 조합원 중 사무직 직업병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47명, 아프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다거나 기타의 사유로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 39명,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유산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1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2명의 여직원이 직업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보다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받으리라 보여진다.